

貿易클레임管理를 위한 契約條項設定에 관한 研究

金 雄 鎮*

- I. 序 論
- II. 貿易去來上 契約의 位置
 - 1. 貿易契約의 意義와 性格
 - 2. 貿易契約書의 重要性
- III. 貿易클레임의 意義와 原因
 - 1. 클레임의 意義
 - 2. 클레임의 原因
 - 1) 直接的인 原因
 - 2) 間接的인 原因
- IV. 貿易클레임管理를 위한 契約條項의 設
 - 1. 클레임 事前管理를 위한 條項
 - 1) 履行保證條項
 - 2) 履行不能條項
 - 3) 不可抗力條項
 - 2. 클레임 事後管理를 위한 條項
 - 1) 클레임處理條項
 - 2) 遲滯償金條項
 - 3) 仲裁條項
 - 4) 準據法條項
 - 5) 裁判管轄條項
 - 6) 貿易代理店의 責任에 관한 條項
- V. 結 論

I. 序 論

우리나라의 經濟規模가 확대되고 貿易去來量이 증대됨에 따라 거래의 첫 시작이라 할 수 있는 契約의 양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 주변을 둘러싼 국내외 貿易環境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貿易紛爭의 발생 가능성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그 형태 또한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 大憲專門大 講師, 經營學博士.

최근 발표된 大韓商事仲裁院의 貿易紛爭에 관한 實態調査에 의하면 貿易紛爭의 주요 원인은 貿易紛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부족과 貿易契約書에 대한 인식부족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標準貿易契約書의 개발 및 활용증대와 계약서작성시 契約條件에 대한 文書化를 제시하고 있다.¹⁾

무역계약은 거래의 상황 및 상품의 성질 및 계약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履行되고 있다. 따라서 무역의 실천수단인 契約書에 앞으로 발생가능한 紛爭에 대비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사실을 포함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契約書의 내용은 형식과 내용상 기재사항이 다양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통일된 標準契約書를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貿易紛爭의 예방을 위하여 當事者가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紛爭을 줄이고, 契約書의 내용에 따라 履行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뿐 아니라 紛爭發生시 조기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증거서류로서 계약서의 작성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계약의 意義와 성격 및 중요성을 통하여 계약의 위치를 고찰해 보고 貿易去來상 발생하는 클레임의 意義와 그 原因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효율적으로 클레임을 관리하기 위하여 계약서상 포함시켜야 할 계약조항을 事前과 事後로 구분하여 그 내용과 적용 예를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II. 貿易去來上 契約의 位置

1. 貿易契約의 意義와 性格

契約은 일정한 法律效果의 발생을 목적으로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 請約과 承諾을 통하여 성립된다. 따라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간에 일정한 債權과 債務를 발생시키고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를 구속하는 法的 性格을 갖는다.²⁾

상이한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貿易契約은 거리와 시간에서 차이가 있고 言語, 慣習, 法制 등의 상이에서 오는 法適用상 불확실성의 內在, 當事者自治 및 商慣習의 존중, 주관적인 간섭문제의 內在, 분쟁발생시 管轄權의 문제, 영미법원칙의 優勢, 국제적인 定型契約의 통일화 운동전개 등에

1) 大韓商事仲裁院, 「貿易紛爭의 實態調査 結果報告書」, 1991, PP.6-7.

2) 金贊鎭, 韓東湖, 「合作投資의 典型契約을 위한 研究」, 大韓商社仲裁院, 1978, P.5.

서 國內契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³⁾

그러나 계약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무역계약은 賣渡人(輸出者)이 買受人(輸入者)에게 물품의 所有權을 양도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국제간의 매매계약으로 諾成契約, 不要式契約, 雙務契約, 有因契約, 有償契約, 國際契約의 법적성질을 지니고 있다.⁴⁾

이러한 무역계약의 법적성질을 보면 우선 당사자의 意思表示의 합치를 필수요건으로 하므로 一方의 請約에 대하여 상대방의 承諾에 의하여 성립된다. 즉 일정한 조건으로 물품을 매매하겠다는 매도인의 請約에 대하여 매수인이 承諾함으로써 성립되므로 諾成契約이다. 이때 당사자간의 의사 표시의 합치는 반드시 文書의 작성이나 교부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口頭를 포함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므로 不要式契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⁵⁾

또한 무역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상호 債務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상대방에 物品給付를 약속시킴과 동시에 자신 또한 그 對價를 이루는 反對給付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매매당사자인 賣渡人은 買受人에게 약정품의 引導義務가 발생하며 買受人은 賣渡人에게 물품대금지급 의무가 발생되어 서로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가 성립되므로 雙務契約의 성격을 띠며, 이때 매도인의 목적물 移轉義務와 매수인의 代金支拂義務가 서로 因果關係를 가지므로 有因契約이 된다.

무역계약은 거래당사자가 서로 對價的 關係에 있는 給付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有償契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賣渡人의 물품인도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으로 보상되며, 買受人의 對價支給은 賣渡人의 물품인도로 양당사자가 기대하는 給付效果를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쌍방의 채무를 발생하게 하고 給付도 서로 對價를 이루므로 有償契約이다.⁶⁾

이외에도 무역계약은 國際契約이므로 國內契約과는 달리 異國의 隔地에 위치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복잡한 성격을 띠며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 관한 것으로서 本人契約, 代理契約, 委託契約에 관한 문제와 계약이행에 있어 品質, 數量, 價格, 引導, 船積, 保險, 決済 등의 문제와 紛爭發生시 클레임처리, 仲裁, 準據法, 裁判管轄 등 기준이 되는 많은 조건들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3) 李泰熙, 「國際契約法」, 學研社, 1985, PP.30-33.

4) 高濬煥, 「國際去來法論」, 經進社, 1986, PP.157-160.

5) 金行權, 「貿易實務」, 貿易經營社, 1981, P.43.

6) 原 猛雄, 「貿易契約の研究」, ミネルウア書房, 京都, 1970, P.5.

2. 貿易契約書의 重要性

무역계약에서 당사자간에 매매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買受人은 계약서를 2부 작성후 賣渡人에게 송부하여 상호 서명후 쌍방이 1부씩을 보관하게 된다.

매매계약은 諾成契約이므로 성격상 서면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口頭에 의한 承諾이나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默示의인 承諾만으로도 법률적인 適法성과 訴求權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대한 증거로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바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고, 당사자의 意圖를 실제로 구체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하여 계약당사자를 구속할 규범을 설정하여 돕으로써 오해를 피하고 불필요한 紛爭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있다.⁷⁾

계약은 일단 성립되면 계약체결 당시의 당사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 口頭證據의 法則(parole evidence rule)이 적용되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추가하고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⁸⁾ 따라서 계약서가 작성되어 계약서상 당사자간의 합의가 최종적이고 완전하다는 것이 明示되어 있는 경우 계약서 이외의 것은 證據能力을 가지지 못하며 만약 당사자간에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합의가 계약서에 起因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합의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계약서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내용의 증명에 대해 계약서 이외의 증거에 의해 立證할 수 있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矛盾되는 것은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작성된 이상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크다.

이와같이 계약서가 지니는 의미와 言語, 制度, 商慣習 등이 다른 隔地者간에 이루어지는 무역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후일의 증거서류로서 계약서의 작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III. 貿易클레임의 意義와 原因

1. 클레임의 意義

7) 小島武司稿, 「會社法務部の理想と現實」, 商事法務研究會, 1982, P.24.

8) 韓國外換銀行, 「英文契約書作成方法」, 1984, P.7.

무역계약에서 클레임(claim)이란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에 관해서 매매당사자에게 일어나는 商事紛爭의 求償을 말한다. 이러한 求償은 피해자인 당사자로부터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提起되게 된다.⁹⁾

실무상 클레임의 종류는 損害貨物에 대한 클레임과 무역거래상의 클레임으로 구분된다.

損害貨物에 대한 클레임은 운송중의 사고에 의하여 화물에 損傷이 생겼을 때 피해자가 선박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무역거래상의 클레임은 계약당사자중 일방이 매매계약에 따른 履行을 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클레임의 법률적의미는 “권리의 주장, 請求權, 債權의 申請”을 뜻하며 이의 종류는 클레임이 매매당사자 이외에서 발생되어 그것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제기되는 클레임과 매매당사자의 일방이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른 履行을 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청구하는 클레임으로 나뉘어지나 10)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 할 때에는 매매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不履行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가리킨다.

클레임은 紛爭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개념인 不滿(complain)이나 紛爭(dispute)과는 해석상 차이가 있다. 이의 구별은 불만이 被害感情에 입각한 불평, 불만을 내용으로 하는 주관적인 감정표시로 클레임의 전단계로 볼 수 있는 데 반하여, 클레임은 객관적인 損害賠償請求의 의사표시로 일정자료를 갖춰 정식으로 제기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엄밀한 의미에서 클레임의 범위는 무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피해를 입은 어느 한 쪽이 거래와 관련 계약을 위반한 다른 상대방을 상대로 계약의 解除, 引導 또는 引受의 拒絕, 價格引下 등 자기의 권리회복을 위하여 실제로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어떤 행위의 요구가 있어야 클레임이라 할 수 있다.

2. 클레임의 原因

무역은 그 개념자체가 異國간에 商行為가 이루어지는 데 따른 交易活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위험이 따른다. 무역거래에서는 여러가지 특수한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클레임이 발생되며 이의 발생원인을 直接的인 原因과 間接的인 原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高麗大學校 貿易研究所, 「世界貿易經營大典」, 1979, P.331.

10) 金容福, 「貿易實務」, 博英社, 1985, P.461.

1) 直接的인 原因

(1) 契約에 原因이 있는 경우

무역거래는 당사자가 異國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계약서가 문서화되기 전에 電文이나 書翰 또는 相談에 의하여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¹¹⁾ 이러한 과정에서 請約이 있는 경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紛爭이 생기기 쉽다.

특히 確定請約(firm offer)은 청약의 제출자를 일정한 기간동안 구속하여 상대방이 그 기간내에 承諾하면 계약으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確定請約에서는 후일 계약의 내용이 될 조건이 전부 명기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履行過程에서 클레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주요 조건에 관한 명백한 합의를 보아야 하며, 또한 계약서를 작성시에는 예상되는 紛爭에 대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두 明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契約의 履行에 原因이 있는 경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당사자는 계약과 관련된 債權과 債務가 발생되므로 信義誠實의 原則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클레임이 발생된다.

무역 클레임은 계약내용에 대한 의도적인 不履行이나 無知, 비합리적인 관리 혹은 불성실 履行 등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며, 계약의 履行과 관련된 클레임의 종류로는 品質, 數量, 損傷 등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클레임과 包裝, 荷印, 船積時期, 運送, 信用狀, 代金決濟, 契約不履行 등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클레임으로 나뉘어진다.

2) 間接的인 原因

(1) 언어의 相異

무역거래는 상이한 언어를 사용하는 거래당사자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상 불편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언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용언어의 語義解釋상의 상이가 클레임발생의 원인이 된다.

(2) 商慣習 및 법률의 相異

세계각국은 고유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 이 법률들은 상당한 異質性을 가진 상태로 거래과정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법률을 異國간의 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에는 법적용의 相沖이라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으로 商慣習이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商慣習은 국가간에 유사한 것이 많고 그 내용이 상이한 것이 있어 紛爭의 원인이 되며,

11) 張致順, 「貿易클레임論」, 東星社, 1985, P.51.

商慣習은 관행일 뿐 국제적인 強行法規는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으므로 계약상 適用法規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商慣習과 법률의 상이에서 오는 당사자간의 異見은 무역 클레임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商慣習과 법률의 상이에서 오는 클레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에대한 정확한 지식의 습득과 계약서상 準據法의 明示가 요구된다.¹²⁾

(3) 信用調査의 未備

國內商去來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信用調査가 비교적 용이하나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의 상대방에 대한 信用調査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즉 항상 변동하는 상대방의 信用狀態 및 金融狀態에 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입수하기 곤란하므로 信用調査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충분한 상태에서 서 불성실한 상대방과 거래를 하게 됨으로써 紛爭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무역거래는 직접 상대방과 面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보다 통신수단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클레임발생에 대비하여 계약에 앞서 철저한 信用調査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일단 信用調査가 이루어진 거래 상대방이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용상태가 바뀔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運送중의 危險

무역계약의 履行을 위해서는 먼거리에 위치한 상대방에게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이러한 운송은 원거리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송중 사고가 발생할 기회가 국내운송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운송중의 위험은 保險制度가 발달되어 있으므로 어느 정도 報償이 가능하나 保險條件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합의를 해 두지 않는 경우 사고발생시 保險구상 범위의 상이로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契約條件에 따라 적절한 부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競爭의 深化

국제간의 경쟁은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좋은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히 공급하려는 데서 비롯된다. 國際競爭에서 優位에 있기 위해서는 품질 및 가격과 생산능력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무역에서 가격의 引下는 大量生産과 勞動生産力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引下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것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품질이 불량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클레임이 발생하게 된다.¹³⁾

12) 張致順, 前掲書, P.56.

13) 姜二秀, 前掲書, PP.19-21.

IV. 貿易클레임 管理를 위한 契約條項의 設定

지금까지 무역거래상 계약의 중요성과 발생가능한 클레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계약서 작성시 무역클레임방지를 위하여 설정할 계약조항을 履行期를 기준으로 事前管理를 위한 條項과 事後管理를 위한 條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클레임 事前管理를 위한 條項

1) 履行保證條項(performance bond clause)

(1) 保證의 概念

國際去來에서 계약의 履行이나 인도의무를 履行할 것을 확인시켜 주기위한 수단으로 銀行, 保證會社 또는 기타 金融機關이 취급하는 保證(guarantee)이 이용되고 있다. 債務者의 契約條件 不履行 또는 違反을 約因으로 일정한 금액의 지급약속이라고 정의되는 保證의 기능은 去來當事者들이 체결한 계약이 예상되는 결과를 가져다주게 하는 豫防的機能과 債務者의 不履行 등에 의한 계약상 예상되는 制約에 대하여 保證人의 기술적, 재정적 또는 운영상의 자원의 이용으로 保證受惠者에게 부가적인 유형의 확인을 가져다주는 救濟的機能으로 구분된다.¹⁴⁾

국제간의 계약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保證의 유형은 入札保證(bid bond), 契約履行保證(performance bond), 先受金還給保險(advance payment bond), 留保金還給保險(retention money bond) 및 瑕疵補修保證(maintenance bond) 등이 있으며 이중 무역거래의 履行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유형이 契約履行保證이다.

保證의 목적은 첫째, 履行保證書가 신용있는 은행이나 保證會社로부터 발행됨에 따라 매수인은 매도인의 財政狀態, 거래상의 명성 및 부여된 계약조건에 따라 성공적인 履行能力에 대한 주의 깊은 평가위에 발행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거래상의 확신을 갖게하며, 둘째, 履行保證이 매도인의 契約不履行이나 수행이 곤란할 때 이에 대한 報償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履行保證에는 保證會社가 발행하는 履行保證과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履行保證이 있으며 양자는 법적성질에서 保證會社의 保證이 고객의 契約履行을 약속하고 만족스런 완성을 保證하는 반면 銀行保證은 代金支給에 따른 保證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銀行保證과 保證會社保證

14) 大韓商工會議所, 「國際建設去來와 契約保證」, 1984, P.12

保證書가 擔保하는 내용은 발행된 保證書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유럽이나 기타의 나라에서 履行保證이 條件附 및 無條件附, 附從的 및 絶對的 지급약속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데 반하여, 미국에서는 無條件의 지급약속인 信用狀과 채무자의 채무이행시 그 履行을 대신 하겠다는 약속인 保證書로 사용되고 있다.

은행보증과 관련 미국에서의 信用狀의 개념은 無條件的 保證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信用狀에 의한 무조건적인 지급보증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은행의 지급의무는 무조건적이어야 하며, 지급은 요구시 환어음의 제시또는 사전에 합의된 서류가 제시되는 경우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信用狀은 반드시 特定 有效期間을 포함하여야 한다.

셋째, 信用狀에는 은행이 지급약속하는 最大金額이 기술되어야 한다.

넷째, 信用狀 발행의뢰인은 은행에 무조건의 償還義務를 부담하고 있어야 한다.

(3) 履行保證條項의 例文

The contractor shall establish performance bond(s) as follows:

a) In case performance bond is established in Korean currency.

The contractor shall be establish performance bond(s) in an amount not less than five(5) percent of the total contract amount in the form of cash or other acceptable form by buyer within ten(10) business day from the contract date of purchase order.

b) In case performance bond is established in US dollars or other curriencies.

The contractor and/or supplier shall establish performance bond(s) with the bank advising the issuance of Letter of Credit, in an amount not less than five(5) percent of the total contract amount in the form of an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cash deposit, bank guarantee or other acceptable form by buyer, which are payable in US dollars or other currencies, which twenty(20) business days from the date of the credit advice by the advising bank and the bond shall be valid for twelve(12) months from the latest shipping date or any extension thereof.

c) If the contractor and/or supplier fails the performance the performance bond within the said period or an extended period, when applicable, the bid bond, if any, may be forfeited by buyer and also buyer reserves the right to rescind the contract.

d) The said bond shall be released without interest upon instruction of buyer after all the supplies of the contract are found to be in acceptable condition. The performance bond shall be released after twelve(12) months from the latest shipping date, even if inspection is not made until such period.

e) Performance bond shall be available for payment at sight upon presentation of it by buyer at the L/C opening bank in Seoul, Korea or advising bank accompanied by a letter signed by buyer's duly authorized person(s) stating that the contractor, or supplier as the case may be, has not complied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계약자는 다음과 같이 履行保證金を 설정하여야 한다.

a) 履行保證금이 원화로 설정된 경우

계약자는 매수인에게 계약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적어도 총계약금의 5% 이상을 현금이나 매수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형태로 履行保證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b) 履行保證금이 미국 달러 혹은 다른 통화로 설정된 경우

계약자 혹은 매수인은 通知銀行의 신용장발행과 함께 적어도 총계약금의 5%를 取消不能信用狀, 現金積立, 銀行保證 혹은 買受人이 이행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履行保證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미국 달러 또는 다른 통화의 형태로 通知銀行이 보증한 날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지급될 수 있어야 하고, 이 保證금은 선적일 또는 연기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c) 만약 계약자 혹은 賣渡人이 정해진 기일 또는 연기된 기일내 은행보증금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이든 買受人에 의해 몰수될 수 있으며, 買受人은 계약을 破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d) 위에서 말한 保證금은 계약상의 모든 공급품이 만족할 만한 상태로 공급된 후에는 매수인의 지시와 관계없이 解除된다. 履行保證은 최종 선적일로부터 12개월후에는 기간중 검사의 終了와 관계없이 解除된다.

e) 이 履行保證금은 買受人이 한국 서울에 있는 신용장 개설은행에 그것을 제시하거나 매수인이 정식으로 사람을 임명한 경우, 그 사람이 계약자 또는 재직자가 계약상의 기일과 조건에 응하지 않았음을 진술하고 서명한 서류를 通知銀行에 제시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2) 履行不能條項(frustration clause)

무역계약은 거래당사자로서 외국의 상대방에게 물품을 引導하고 그 물품대금지급의 상대적 履行을 실현시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은 信義誠實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되어야 하나 실제 거래에 있어 계약체결시에는 豫見할 수 없었으나 계약체결후 偶發的인 사태의 발생으로 본래의 내용과 같이 계약을 履行할 수 없게 되므로서 본질적인 의무의 履行에 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다.

이와같이 당사자의 統制範圍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이행이 違法으로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또는 履行이 계약체결시 의도하였던 목적을 消滅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이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반드시 履行하여야 한다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예외가 필요하다.

계약체결후 後發的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의 불능이 발생한 경우의 종류는 債務者의 귀책사유없는 後發的不能과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後發的不能으로 구별된다.

이때 채무자의 귀책사유없는 후발적인 이행불능을 frustration이라 하며 이의 성립에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으며 frustration이 성립하는 경우 계약은 消滅하고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채무의 履行이 免除된다.

後發的不能을 계약법상의 원칙에 의해서만 처리하는 것은 확실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이 따르므로 債務者가 善意, 無過失인데도 불구하고 債務者의 統制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履行不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상 이에관한 조항을 설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履行不能과 不可抗力條項과의 關係

契約當事者가 契約締結後에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 履行이 불가능하더라도 계약상의 義務不履行에 대하여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嚴格履行의 原則이 普通法상 확립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嚴格履行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함에도 계약당사자에게 계약의 履行을 강요하는 것은 當事者의 이익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므로 이러한 부당성을 是正하기 위한 방법이 履行不能法理의 發展을 통한 判例와 立法을 통하여 강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普通法 國家에서는 계약의 消滅을 履行不能에 의한 履行不能法理의 측면에서, 大陸法 國家에서는 不可抗力의 측면에서 계약의 消滅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履行不能과 不可抗力은 계약의 履行을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이지만 履行不能이 계약을 消滅시키는 데 반하여 不可抗力은 계약을 消滅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免責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¹⁵⁾ 이러한 2개의 원칙은 계약의 履行不能이라는 문제를 상이한 관점에서 보고 있지만¹⁶⁾ 契約當事者의 면책을 인정하는 합리적인 근거로서 적용되고 있다.

15) 中村巳喜人, 「貿易契約論」, 有朋堂, 1976, P.252.

책임이 없다.)

3) 不可抗力條項(force majeure clause)

(1) 不可抗力의 概念

不可抗力이란 용어는 貿易契約에서 不可抗力條項¹⁷⁾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不可抗力은 주로 私法상 당사자가 그의 故意, 過失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義務履行의 절대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制限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개념으로 이러한 사태를 不可抗力事態라 하고 동 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條項을 不可抗力條項이라 한다.¹⁸⁾

不可抗力에 의한 면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채무자의 歸責事由가 아닌 외부적 요건에 의하여 절대적인 履行不能이 발생할 것, 둘째, 그 사유가 當事者が 피할 수 없는 것이며 豫測할 수 없는 것일 것, 셋째, 債務의 履行에 있어 해결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2) 不可抗力條項의 範圍와 限界

不可抗力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範圍는 외부에서 발생한 사실로서 當事者が 去來觀念상 그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일체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不可抗力의 경우이다. 그러나 不可抗力條項은 통상의 의미를 변환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며¹⁹⁾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태가 不可抗力인지 列擧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不可抗力이라는 용어만으로는 그 내용의 의미가 극히 막연하다.

不可抗力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일정한 要件이 충족될 필요가 있으나 단지 不可抗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事實 내지 事態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定型化된 것은 없고 個別的인 경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不可抗力條項의 설정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은 不可抗力의 범위로서 단순히 當事者의 歸責事由없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통상의 不可抗力 등으로 抽象的인 용어의 사용시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當事者간에 만일의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免責의 범위를 확대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⁰⁾

(3) 不可抗力條項의 效果

17) 不可抗力條項은 Force Majeure 또는 Escape clause라고 표기되며 契約違反으로 부터 當事者를 보호하기 위한 免責條項과는 상이하다. 不可抗力條項은 특정사태가 발생하여 그 사태의 결과로서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8) 李慶武, "國際賣買契約에서의 不可抗力(Force Majeure)條項", 「仲裁」, 大韓商事仲裁院, 1987, P.18.

19) 李泰熙, 前掲書, P.107.

20) 金雄鎭, 「國際物品賣買契約上 履行不能에 관한 研究」, 明知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請求 論文, 1990, PP.143-144.

계약시 不可抗力條項을 설정하는 기본목적은 契約締結후 당사자들의 支配를 벗어나는 不可抗力 사태의 발생시 契約當事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不可抗力條項의 효과는 계약에 따라 다양하여 契約의 履行을 방해하여도 不可抗力의 발생시 契約를 자동적으로 중지, 연장 또는 消滅시키거나 또는 契約當事者에게 계약기간의 延長 또는 中止나 取消權의 선택을 부여한다.

各國法에서 不可抗力條項의 效果를 보면 英國과 美國에서는 契約締結의 기초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를 履行不能으로 간주하여 동 사태가 判例法상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終了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民法에서 私法自治에 따른 任意規程으로서 當事者들이 不可抗力條項을 설정시 조건이 성취하게 되면 契約는 자동적으로 消滅되며, 이에따라 契約의 義務履行은 면제되고, 상대방이 仲裁에 부탁하거나 訴訟을 제기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抗辯할 수 있게 된다.²¹⁾ 또한 不可抗力事態의 발생으로 인하여 特定한 대로의 義務履行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當事者는 면책이 된다.

不可抗力條項에 의거하여 履行不能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契約의 效力을 消滅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契約當事者들이 不可抗力에 列擧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合意를 하면 되고, 둘째,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仲裁條項에 따라 仲裁를 신청하면 되나 이때 仲裁判定에 불복하거나, ²²⁾ 仲裁條項이 없는 경우에는 訴를 제기하면 된다.

契約當事者는 不可抗力의 사태가 계속되는 기간에 따라서는 契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不可抗力事態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자동적으로 契約이 消滅되든가 또는 契約解除權을 갖는다고 明示해 두어야 한다.

(4) 不可抗力條項의 例文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for failure to perform its part of this Agreement when such failure is due to fire, flood, strikes, labour troubles or other industrial disturbances, inevitable accidents, war(declared or undeclared), embargos, blockades, legal restrictions, riots, insurrections, or any cause beyond the control of the parties²³⁾.

(모든 當事者는 본 契約를 履行할 수 없는 사유가 화재, 홍수, 同盟罷業, 勞動爭議 기타 노사분규, 불가피한 사고, 戰爭(宣傳布告의 유무를 불문함), 積荷禁止, 封鎖, 法的制限, 騷擾, 內亂 기타 當事者가 지배할 수 없는 일체의 원인에 의한 때에는 본 契約의 不履行에 대하여 책임을 지

21) 郭潤直, 「民法總則」, 博英社, 1973, PP.428-430.

22) 仲裁法 第3條.

23) 土井輝生, 「國際契約ハンドブック」, 同文館, 1971, P.534.

지 않는다.)

2. 클레임 事後管理를 위한 條項

1) 클레임處理條項(claim clause)

(1) 클레임處理條項의 意義

買賣當事者간에 계약서에 미리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의 해결조항인 클레임 처리조항을 협의해서 규정해 두면 클레임의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된다. 클레임條項에는 클레임이 분쟁화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해결방법, 瑕疵通知 및 발생한 클레임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立證手段, 비용부담 및 不可抗力의인 제 사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의 처리 및 기간내 클레임이 提起되지 않을 시 클레임제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계약상 언급이 없는 경우 클레임발생시 해결방법, 立證手段, 비용부담 및 클레임 제기기간 등에 대한 당사자간 의견 불일치로 또 다른 紛爭이 발생하고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2) 클레임處理條項의 效果

契約書상에 “일정한 期間內에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클레임 제기기간에 관한 條項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期間內에 權利行使와 權利履行이 있어야 한다.

그 제한된 期限(除斥期間)이 경과하면 買受人은 目的物의 瑕疵에 대한 救濟權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賣渡人은 제한된 기간내에 요청된 클레임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그 이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免責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²⁴⁾

(3) 클레임處理條項의 例文

Buyer shall give seller written notice by registered airmail of any claim within thirty(30) days from the arrival of the goods at the port of destination stipulated on the face of this contract, Unless such notice, accompanied by proof certified by an authorized surveyor, is sent by buyer within such thirty(30) days period, Buyer shall be deemed to have waived all claims. In no case shall buyer make any claim for indirect or any claim in respect of a particular lot or part of a lot of the goods exceed the cost of repair or replacement of such lot or part of a lot.

24) 추창엽·김용진, 「무역실무론」, 형설출판사, 1994, PP.144-145.

(買受人은 본 契約의 서면상 명기된 지점에 물품의 到着日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클레임에 대하여 航空登記郵便으로 賣渡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통지가 公認檢定機關에 의해 證明된 書類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다면 30일 이내에 賣渡人에 의해 송부되어야 하며, 買受人은 모든 클레임을 유보할 수 있다. 買受人은 단위나 부품의 處理나 交替費用을 초과하는 間接費나 어떠한 클레임에 대하여 클레임을 提起할 수 없다.)

2) 遲滯償金條項(liquidated damages clause)

(1) 履行遲滯의 概念

貿易契約에서 賣買當事者의 책임있는 事由로 인하여 債務의 내용에 따른 履行을 하지 않음으로써²⁵⁾ 발생하는 契約違反(breach of contract)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契約違反이란 債務者가 債務의 본지에 따른 債務의 내용에 적합한 給付를 양는 것으로 履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기간을 지나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것,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履行하지 않는 것 및 履行拒絶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포괄하는 概念이다.²⁶⁾

이러한 契約違反은 주로 英美法에서 사용되는 概念으로²⁷⁾ 우리나라 民法을 포함한 大陸法에서는 모든 種類의 債務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債務不履行 또는 契約不履行으로 부르고 있다.²⁸⁾ 契約違反의 분류에는 그 방법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大陸法系에서는 履行遲滯, 履行不能 및 不完全履行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英美法系에서는 大陸法系의 不完全履行을 契約違反으로 삼지 않는 대신 履行의 到來前에 債務者가 履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履行拒絶로서 계약위반의 한 형태로 다루어 履行遲滯, 履行不能 및 履行拒絶로 분류하고 있다.²⁹⁾

이중 履行遲滯는 契約違反중 가장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법의 法統에 따라 그 의미가 약간씩 상이하다. 즉 大陸法에서는 債務가 履行期에 있고 또한 그 履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債務者의 故意, 過失 또는 信義誠實의 原則상 이와 동등시 할 수 있는 事由로 인하여 債務의 내용에 맞는 履行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한편 英美法에서는 債務者가 履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履行期 到來後에 현실적으로 債務를 履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³⁰⁾ 이러한 履行遲滯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효한 債務가 존재할

25) 郭潤直, 「債權總論(民法講義 III)」, 法文社, 1978, P.119.

26) 林泓根, 「輸出貿易契約의 法理」, 三英社, 1978, P. 82.

27) 徐希源, 「英美法講義」, 博英社, 1984, P.300.

28) 王璠鍾, 「貿易契約論」, 法文社, 1988, P.426.

29) 津田昇, 「貿易引合と契約」, 通商産業調査會, 1972, P. 163.

30) 守屋善輝, 「英美契約法概說」, 有斐閣, 1971, P.93.

것, 履行이 가능할 것, 債務가 履行期에 있을 것, 履行하지 않는 것이 債務者의 責任있는 事由에 의할 것, 履行하지 않는 것이 違法일 것 등의 요건이 요구된다.³¹⁾

(2) 履行遲滯의 效果

履行遲滯 발생시 效果로는 履行遲滯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은 遲滯에 대한 履行의 強制를 청구할 수 있으며, 債權을 위해 特別擔保가 設定되어 있는 경우에는 擔保權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일정한 要件아래 契約을 解除할 수도 있다.

履行遲滯사유가 발생할 것에 대비 契約서상 이에 대비하기 위한 條項으로서 遲滯償金條項을 설정하여 두면 효과적인 紛爭의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條項을 설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遲滯償金條項의 例文

a) In case the contractor fails to make delivery of the contract commodity within the shipping date stipulated in the relative letter of credit due to the reasons attributable to the contractor, Buyer shall impose on the contractor liquidated damages for late shipment in the amount equivalent to one tenth of one percent(0.1%) of contract amount for each day delayed. If partial shipment is allowed, 0.1% of the amount of the delayed portion for each day shall be imposed. Notwithstanding the above, the liquidated damages not exceed five(5) percent of the contract amount and/or the amount of delayed partial shipment respectively.

b) Buyer is entitled to deduct the liquidated damages under this article from any money due to the contractor and/or supplier or withdraw the liquidated damages from the performance bond established under the contract or fail a claim against the contractor.

c)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a) and b) hereof, if the contractor fails to make delivery of the contractor commodity within the shipping date stipulated in the relative letter of credit, Buyer shall reserve an option to nullify or terminate the contract in whole or in part assuming the occurrence of an event of default unless otherwise agreed by and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a) 契約者가 契約者 자신의 사유로 인하여 관련 信用狀상에 명기된 선적일 이내에 契約물품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買受人은 契約자에게 船積遲延에 대한 遲滯償金으로 매 1일 지체마다 契約금

31) 郭潤直, 「債權總論」, 博英社, 1983, PP.121-133.

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만약 分割貯積이 허용된다면 매일 지체된 부분에 대하여 총액의 0.1%를 부과한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遲滯償金은 계약금이나 혹은 분할 선적분의 0.5%를 초과하지 못한다.

b) 買受人은 이 조항에 의해 계약자 혹은 賣渡人이 지불한 어떠한 금액이나 적립된 遲滯償金으로부터 遲滯償金을 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계약자를 상대로 클레임을 提起할 수 있다.

c) 상기 a), b)항의 약관에도 불구하고 만일 계약자가 계약물품을 신용장상에 명기된 기일내에 引導하지 못한다면 매수인은 利害關係者들의 동의가 없는 한 契約不履行事態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取消하거나 解除할 수 있는 選擇權을 가진다.)

3) 仲裁條項(arbitration clause)

(1) 仲裁의 意義

클레임의 해결방법에는 請求權의 棄却, 和解, 斡旋, 調停, 仲裁, 訴訟이 있으며 이중 청구권의 拋棄나 和解는 당사자간의 해결방법이나 斡旋, 調停 및 仲裁는 第3者에 의한 해결방법이다.

第3者에 의한 방법중 仲裁는 仲裁가 가능한 일정한 法律關係의 紛爭을 당사자간의 合意(仲裁契約 또는 仲裁合意)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私的인 第3者(仲裁人)에게 부탁하여 그 判定에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自治法定制度를 말한다. 즉 仲裁란 어떤 論爭이나 紛爭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선택에 의하여 仲裁人을 선정하고 합의로써 자신들의 紛爭을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마련된 私的 法定에서 仲裁人들이 결정하도록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³²⁾

仲裁는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紛爭을 仲裁에 의해서 해결한다는 明示的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³³⁾ 계약상의 방법인 것을 그 특성으로 한다.³⁴⁾ 이때 합의는 紛爭이 발생되기 전 사전에 합의할 수도 있고, 紛爭이 발생한 후에 발생한 紛爭을 중재에 회부하기 위하여 합의할 수도 있다.

調停, 仲裁, 訴訟의 차이는 調停의 경우 調停案의 수락여부는 당사자의 任意事項이나 仲裁의 경우 仲裁判定은 거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결과는 強制的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는 訴訟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仲裁에 의한 판정은 단지 1회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訴訟과는 차이가 있다.

32) 鄭己人, 「商事仲裁論」, 貿易經營社, 1984, P.37.

33) 仲裁契約은 仲裁의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紛爭을 없애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書面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仲裁法 第2條에서도 書面契約을 요구하고 있다.

34) 森井 清, 「國際商事仲裁の研究」, 東京大學出版部, 1978, P.10.

訴訟과 仲裁의 特色

訴 訟	仲 裁
<ul style="list-style-type: none"> ○民事, 刑事, 行政 등 모든 紛爭 ○일방적으로 合意없이 提訴可能 ○2審, 3審과 抗訴, 上告 可能 ○公權力에 의해 解決 ○公開原則으로 秘密維持 곤란 ○費用, 時間면에서 불리하며 장래 거래유지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私法상 紛爭 ○계약당사자의 仲裁에 관한 合意必要 ○單審 즉 最終審 ○私的判定에 의해 解決 ○非公開이므로 秘密維持 가능 ○費用, 時間면에서 경제적이며 해결이 신속, 간단

(2) 仲裁의 成立要件

仲裁契約이 성립되기 위한 前提要件으로는 당사자가 能力이 있고 仲裁意思에 瑕疵가 없고 契約內容이 可能, 確定, 適法하고 社會的妥當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前提條件이 구비되었다 하더라도 실무에서는 有效要件이 문제가 된다. 중재계약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仲裁를 담당할 仲裁人, 仲裁場所 및 機關(仲裁地내의 특정한 審問場所 또는 仲裁場所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仲裁節次 및 準據法³⁵⁾이 정확하게 명기되어야 유효한 仲裁契約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外國仲裁判定의 承認 및 執行에 관한 國際條約」에 계약당사자가 속하는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仲裁合意를 해 두어야 한다.³⁶⁾

이는 분쟁발생시 有效要件이 불분명하면 이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거나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仲裁에 의한 해결이 의미가 희박하게 되기 때문이다. 仲裁는 본질상 당사자가 모든 절차를 仲裁契約 또는 기타 特約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으므로 이 約定은 準據法상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3) 仲裁契約의 效果

仲裁契約을 체결한 當事者가 法院의 訴訟節次를 개시한 때에는 그 訴訟節次的 어떠한 당사자도 절차의 중단을 法院에 청구할 수 있다.³⁷⁾ 그러나 法院에 訴訟節次的 中斷을 청구하기 전에 중단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유효한 仲裁契約이 존재하고 仲裁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 및 아직까지도 仲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할 용의가 있고 그것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法院에 확신시켜야 한다. 이것이 확인될 때 法院은 訴訟節次를 중단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35) 契約의 解釋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準據法에 의하여 하게 되지만 실제로 仲裁節次나 判定은 仲裁를 받고 있는 仲裁地의 節次法에 따라 仲裁人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계약상의 準據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仲裁條項에는 별도의 仲裁에 대한 準據法을 설정하여 두어야 한다.

36) 洪武夫, 「英文國際條約」, 경영문화원, 1985, P.151.

37) 仲裁法 第4條.

이때 法院이 訴訟節次를 거부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立證은 訴訟節次를 개시한 당사자에 있으며 이는 法院이 訴訟行爲의 中斷의 承諾 및 拒絕이 전적으로 당사자의 裁量權이라는 취지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법을 해석해 왔기 때문이다.

한편 法院의 訴訟行爲 중단에 대한 거부는 동일 사실로부터 발생된 二重訴訟節次의 결과가 될 수 있는 경우, 虛僞의 주장이 있는 경우와 중단의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현저한 遲延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거꾸로 당사자는 仲裁을 제한하는 禁止命令을 法院에 요구할 수 있으나 法院이 이 요구를 수용하였던 적은 거의 없으며 다만 仲裁條項이 삽입되어 있는 全契約이 무효라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禁止命令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4) 仲裁契約의 限界

仲裁契約은 당사자간의 자발적인 의사로서 訴訟이 아닌 仲裁로서 紛爭을 해결하는 私的 意思表示인 동시에 仲裁人에게 일정한 권한을 발생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仲裁人은 당사자의 의사를 초월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仲裁契約에 근거한 仲裁人의 권한의 限界는 法院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므로 仲裁人의 權限은 다소 축소적이어야 할 것이다. 法院에서 보는 仲裁契約의 범위설정은 仲裁의 당사자들이 仲裁契約에서 명시적으로 紛爭의 性質 및 仲裁人의 權限을 규정한 경우에는 法院에서 간섭할 여지가 없다.

仲裁人이 法院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仲裁契約의 範圍를 이해하고 司法的 觀點에서 仲裁의 대상문제를 審問開始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5) 仲裁條項의 例文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parties concerned.

(본 契約으로부터, 또는 본 契約과 관련하여 또는 본 契約의 不履行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紛爭, 論爭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大韓商事仲裁院의 商事仲裁規則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仲裁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仲裁人(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4) 準據法條項(governing law clause)

(1) 準據法條項의 意義

貿易契約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법률을 달리하는 국가에 위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계약의 成立, 效力 및 解析과 이로부터 발행하는 제반 문제를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결할 것인가 하는 準據法의 문제가 발생한다. 국제거래는 법률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습 및 관행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貿易去來에서 적용하고 있는 貿易條件(trade terms)은 국가마다 해석상 각기 차이가 있다.³⁸⁾

準據法이란 2국의 당사자간에 계약이 체결될 때 당해 계약을 規律할 근거가 되고 규범밖의 사항을 관할하는 지정된 각국의 국내법을 의미하며, 準據法條項은 그 契約書를 해석하고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결정하는 데 어느 나라의 實體法을 적용하느냐를 규정하는 條項이다.³⁹⁾ 準據法의 지정은 계약당사자가 지정하며, 당사자의 의사가 不明할 때는 涉外私法에 따라 行爲地法에 의하며, 指定準據法이 없거나 당사자의 의사가 不明할 때에는 法律關係의 성질에 따라 法庭地의 涉外私法이 정하는 準據法이 적용된다.

貿易契約은 債權契約이기 때문에 物權에서와 같이 일정한 장소와의 확정된 관계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당사자의 當事者自治의 原則(doctrin of autonomy)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 당사자의 의사가 不明할 때에는 行爲地法이나 法庭地의 涉外私法이 準據法이 된다.⁴⁰⁾

실제로 계약의 成立 및 效力에 관한 準據法의 결정에 관해서는 各國의 立法, 判例 및 學說에 따라 일정치 않다. 각국의 國際私法에서는 準據法 결정방법에 관하여 客觀主義와 主觀主義로 나뉘어진다. 客觀主義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계약의 準據法은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국가의 國際私法상 지정되어 있으며 국가에 따라 締結地主義⁴¹⁾, 行爲地主義⁴²⁾, 債務者の 本國法主義가 있다.

主觀主義를 택하는 국가⁴³⁾에서는 契約의 準據法이 當事者自治의 原則에 따라 當事者の 意思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仲裁條項과 함께 準據法條項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準據法으로서 어느 국가의 법률도 당사자는 자유로 선택할 수 있으나 裁判管轄條項과 準據法條項을 함께 설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권을 갖게 된 국가가 客觀主義를 취하는 국가일 때 그 국가의 國際私法에 따

38) 張英俊, 「貿易契約論」, 學文社, 1992, P.238.

39) 國際去來法學會, 「貿易紛爭의 解決」, 「國際去來法研究」, 1992, PP.344-345

40) 玉璠鍾, 前掲書, P 313.

41) 美國의 몇 개 洲와 스위스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42) 中南美諸國, 美國의 몇 洲에서 채택하고 있다.

43)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日本, 英國, 獨逸,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브라질, 美國의 몇 개 洲에서 채택하고 있다.

라 準據法을 설정해 두지 않으면 準據法條項을 설정한 의미가 없게 됨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當事者 自治主義를 채용하고 있는 국가가 많으므로 준거법을 지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⁴⁴⁾

(2) 準據法條項의 例文

Unless specially stated, the trade terms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nd construed under and by the latest Incoterms and the formation, validity, construc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are governed by the laws of Korea.

(특히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貿易條件은 최근의 인코텀스에 準據하여 解析하며 계약의 成立, 效力, 解析 및 履行은 韓國法에 따른다.)

5) 裁判管轄條項(jurisdiction clause)

계약의 紛爭解決方法에 관한 規程이 없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새롭게 仲裁에 관하여 解決할 것에 합의하지 않는 한 그 계약을 둘러싼 紛爭은 최종적으로 국가가 행하는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계약에 미리 訴訟을 提起하는 法院을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해 두는 것이 裁判管轄條項이다. 仲裁條項이나 裁判管轄條項이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임의로 法院에 訴訟을 제기할 수 있으며⁴⁵⁾ 이때 訴를 접수한 法院은 그 國法에 비추어 당해 法院에 裁判管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訴訟이 행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가 국가를 달리하는 訴訟은 “原告는 被告의 管轄法院에 訴訟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被告의 所在地, 被告가 회사일 경우에는 그 本店 또는 營業所의 所在地 法院에 訴訟을 제기하면 그 法院이 管轄權을 행사하게 된다.

裁判管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어느나라의 法院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契約當事者의 자유이나 訴를 접수한 法院은 그 국가의 法規에 미루어 재판관할의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일방이 재판관할에 관계없이 다른 法院에 提訴한 경우에는 法院은 獨自의인 판단으로 訴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간에 합의된 法院에서의 裁判管轄이 인정되나 일부국가에서는 계약당사자의 合意管轄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는 경우도 있다.

裁判地와 行爲地의 裁判管轄이 상이한 경우의 문제점으로는 裁判地의 결정을 行爲地의 法院에

44) 洪武夫, 前掲書, P.184.

45) 韓國外換銀行, 前掲書, P.46.

이의 承認 및 執行을 청구하는 訴訟을 다시 제기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訴訟받은 국가의 法院에서 그 國家의 民事訴訟法에 따라 外國判決의 承認 및 執行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外國判決을 承認하여 執行하는 것에 관하여 당해 외국과의 相互 保證이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裁判管轄條項의 例文

This agreement must be constred and take effect as a contract made in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Korea and the parties hereby submit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of Korea.

(본 계약은 한국에서 韓國法에 準據하여 작성된 계약으로 解釋되고 그리고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양 당사자는 韓國法院의 裁判管轄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6) 貿易代理店의 責任에 관한 條項(clause on agent's responsibility)

(1) 貿易代理業의 概念

무역거래에 있어 계약의 성립은 賣渡人과 買受人간에 직접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賣渡人이나 買受人의 委任을 받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委任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貿易去來의 특성상 점차 販路가 확대되어 갈수록 매매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請約과 承諾科程을 수행하는 데는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障礙라든가 制約을 해제하고 生活活動, 配給活動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이용하게 된 것이 무역거래상 代理店制度이다.

貿易代理店(通稱 offer商)이란 “外國의 製造業者 또는 輸出入業者의 委任을 받은 자가 本社를 代理하여 商品, 技術, 資本, 用役 등에 대한 市場擴大와 販賣促進에 종사함으로써 代理權의 委任者로 부터 手數料를 취득하는 者”로 定意할 수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組織을 貿易代理店이라 칭한다.⁴⁶⁾ 무역계약은 거래과정에서 그 계약이 本人간 계약이나 代理契約이냐에 따른 인식 부족으로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 法律上 代理의 概念

法律상 代理라 함은 他人(代理人)이 本人의 이름으로 法律行爲(意思表示)를 하거나 또는 意思表示를 수령함으로써 그 法律效果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⁴⁷⁾ 즉 법률행위는 자기가 직접하지 아니하고 代理人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가 代理制度인 것

46) 貿易代理店協會, 「貿易代理店解説」, 1989, P.7.

47) 郭潤直, 「民法總則(民法講義 I)」, 學文社, 1984, P.397.

이다.⁴⁸⁾

이러한 代理制度는 本人의 거래범위를 확장함과 동시에 의사능력이 없는 者들에게 代理人에 의한 거래의 길을 열어주고 私的自治를 확장 및 보충하여 주고 있다. 代理의 法律的 特色으로는 代理人이 本人과 동등한 지위에 서서 代理權을 가지며, 代理人의 행위는 代理人의 의사에 의한 독립행위이며 그 법률적 효과가 직접 本人에 귀속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⁴⁹⁾

代理는 意思表示를 하는 者와 그 意思表示에 부여되는 法律效果를 취득하는 者가 다르므로 代理關係는 三面關係 즉 本人과 代理人과의 關係(代理權의 關係), 代理人과 相對方(第3者)과의 關係(代理行爲의 關係), 本人과 第3者와의 關係(代理效果의 關係)가 성립하게 된다.⁵⁰⁾

(3) 代理의 三面關係

가. 本人과 代理人과의 關係

代理店契約은 代理店과 本人간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 계약에 의거 대리점이 本人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내에서 第3者와 거래를 한다면 법률관계는 第3者와 本人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며 이때 대리점은 契約關係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판매계약은 자기의 名義와 計算으로 賣渡人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자기의 名義와 計算으로 第3者에게 專賣하는 것이므로 賣渡人과 第3者는 法律的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와같이 代理店契約의 두 類型은 그 法的性質을 달리하므로 貿易契約締結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나. 代理店과 第3者와의 關係

代理店契約에 의하여 販賣 또는 購入을 위임받은 대리점이 第3者인 賣渡人 또는 買受人과 契約를 締結한 경우 다음 3가지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 경우 代理店과 第3者간의 權利와 義務는 本人의 形態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데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契約上 本人이 明示된 경우

契約上 代理店이 代理人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점과 本人의 이름을 第3者에게 명시하여 契約한 경우 代理店을 통한 계약의 효과는 전부 본인에게 귀속되며, 계약관계는 本人과 第3者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本人과 第3者는 서로를 상대로 하여 訴求할 수 있게 된다. 이때 代理店은 本人과 第3者간의 法律關係에 관해서 아무런 權利와 義務의 變動을 초래하지 않으며 그 범위내에 있

48) 金俊鎬, 「民法講義」, 法文社, 1991, P.125.

49) 李恒寧·朴一慶, 「法律學辭典」, 東民出版社, 1985, P.334.

50) 金雄鎭, “貿易去來上 貿易代理店の 責任限界에 관한 研究”, 「國際商學」, 韓國國際商學會, 1992, P.111.

어서는 本人과 第3者에 대하여 訴를 提起할 수 없으며 또한 누구로 부터도 訴를 제기당하지도 않는다.⁵¹⁾

나) 契約상 本人에 대한 明示가 없는 경우

契約상 어떤 사람의 代理人으로서 계약을 하지만 本人의 이름을 第3者에게 明示하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代理店은 本人이 明示된 경우와 같이 第3者와의 사이에 체결된 契約關係로 부터 벗어나고 契約關係는 本人과 第3者간에 직접 성립된다. 이러한 거래 형태는 英美法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英美法에서는 商慣習, 어음, 捺印證書에 의한 契約, 代理店이 外國에 있는 本人을 위하여 契約를 체결한 경우에 代理店이 계약을 체결하여도 本人이 구속되지 않는 特例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紛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代理店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本人의 이름을 명기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代理店の 이름으로 契約된 경우

代理店이 자신의 누구의 代理人이라는 것을 명기하지 않고 代理店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代理店이 이처럼 本人으로부터 정당하게 權限을 수여받고도 그 權限을 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통상 第3者的 選擇權과 本人의 介入權이 발생하게 된다. 우선 本人으로서는 계약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시에 代理權이 수여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 계약에 관하여 직접 第3者를 訴追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第3者는 代理關係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代理店을 직접적인 契約當事者인 本人으로 보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代理店은 本人의 위치에 있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 代理店은 第3者에 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履行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 本人과 第3者와의 關係

代理店이 本人에 대하여 第3者와의 거래를 할 때에는 그 거래는 第3者와의 거래로 취급된다. 따라서 本人은 자신을 위하여 정당하게 체결된 모든 계약에 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第3者에 대하여 訴求를 할 수 있으며 第3者도 本人을 상대로 訴求할 수 있다. 그러나 第3者가 代理店이 누구의 代理店인지 불명확한 경우 다음과 같이 本人의 책임이 다르게 된다.

가) 契約상 本人이 明示되어 있는 경우

代理店이 本人으로부터 위임받아 代理權限의 범위내에서 거래를 하였고 代理店이 第3者에게 本人에 대한 代理行爲를 밝히고 거래를 한 경우에는 本人은 그 거래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다.

51) 有斐閣, 「貿易法律(1)」, 貿易實務講座 第8卷, 1962, P.141.

나) 契約상 本人이 明示되어 있지 않는 경우

代理店이 本人으로부터 위임받은 代理權限의 범위내에서 거래를 하였지만 代理店이 第3者에게 代理店으로서 거래를 한다는 것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本人과 代理店 모두가 거래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第3者가 本人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第3者는 代理店이나 本人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여 그 거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第3者가 選擇權을 행사하여 代理店을 상대로 訴訟을 제기한 이상 다시 本人을 상대로 訴訟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러한 選擇權은 당해 거래의 本人을 알게 된 후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만약 第3者가 그 거래의 本人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代理店에 대해서만 거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상 本人의 명시여부에 따라 紛爭發生시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계약이 本人이 아닌 貿易代理店을 통하여 계약이 이루어지고 추후 클레임발생시 貿易代理店을 통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貿易代理店の 책임에 관한 條項을 설정해 둬으로써 本人과 貿易代理店の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4) 貿易代理店の 責任에 관한 條項의 例文

In accordance with contracting commercial contract by seller's agent to act for and represent the seller with buyer, administration fees, all banking charge, performance bond charge and other related charge including postage that are incurred during the performance of the seller's contractual obligations outside of Korea shall be for the account of seller. Seller's agent has shared the seller's responsibility on above-mentioned fee and charges as well.

In case that the seller has made any breach of contract, the performance bond provided by seller's agent shall possessed by purchaser.

(賣渡人을 대리하는 代理店으로 買受人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외에서 賣渡人의 계약의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郵便料를 포함한 행정수수료, 은행수수료, 履行保證 등 제비용은 賣渡人이 부담한다. 賣渡人의 代理店은 상기 언급한 비용과 수수료에 대하여 賣渡人과 連帶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賣渡人이 契約違反을 한 경우에는 賣渡人의 代理店이 제공한 履行保證金은 買受人에게 귀속된다.)

5. 結 論

계약은 일정한 法律關係의 발생을 목적으로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合致에 의하여 성립된다. 따라서 계약은 당사자간에 일정한 債權과 債務를 발생시키고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를 구속하는 法的 性格을 갖는다.

무역계약은 諾成契約이므로 성격상 서면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口頭에 의한 承諾이나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默示的 承諾만으로도 법률적인 適法性和 訴求權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계약의 성립 및 내용에 대하여 후일의 증거가 되어 당사자의 의도하는 바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고, 履行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계약당사자를 구속할 규범을 설정하여 둠으로써 당사자간에 불필요한 紛爭을 발생하지 않게 하는 데 있다.

무역계약에서 클레임이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피해를 입은 어느 한 쪽이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을 違反한 다른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계약의 解除, 引導 또는 引受의 拒絶, 價格引下 등 자기의 權利回復을 위하여 실제로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어떤 행위의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클레임의 직접적인 원인은 계약에 원인이 있는 경우와 계약의 履行에 원인이 있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간접적인 원인에는 言語와 商慣習 및 法律의 相異, 信用調査의 미비, 運送중의 危險과 競争의 深化로 인하여 발생한다.

계약에 원인이 있는 경우로는 契約書의 不備로 인하여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클레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契約書作成시 클레임발생에 대비한 關連 條項을 설정해 두어야 한다.

즉 클레임의 事前管理를 위한 條項으로 國際去來에서 契約의 履行이나 引導義務를 履行할 것을 확인시켜 주는 수단으로 銀行, 保證會社 또는 기타 金融機關이 債務者의 契約條件의 不履行 또는 違反을 約因으로 일정한 金額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履行保證에 관한 條項과 계약체결시에는 豫見할 수 없었으나 계약체결후 우발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본래의 내용과 같이 계약을 履行할 수 없게 됨으로서 계약상의 본질적인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비한 履行不能條項과 不可抗力條項을 설정해 두어야 한다.

또한 事後管理를 위한 條項으로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방법, 瑕疵通知 및 발생한 클레임을 有效하게 하기 위한 立證方法 등을 통한 해결조항인 클레임處理條項, 賣買當事者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債務의 내용에 따른 履行을 지정된 기일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遲滯됨으로써 발

생하는 契約違反을 처리하기 위한 遲滯償金條項, 紛爭이 발생시 이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선택에 의하여 仲裁人을 선정하고 合意로써 자신들의 紛爭을 私的 法庭에서 그러한 仲裁人들이 결정하도록 위탁하는 仲裁條項, 무역계약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법률을 달리하는 국가에 위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계약의 成立, 效力 및 解析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어느 국가의 法律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訴訟을 提起하는 法院에 대하여 규정한 準據法條項 및 裁判管轄條項 및 代理店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貿易代理店을 통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本人과 連帶責任을 부과하기 위한 貿易代理店の 責任에 관한 條項을 設定해두어야 한다.

상기와 같은 條項을 적절히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예기치 않은 클레임 제기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紛爭이 발생하여도 조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함께 활용이 요구된다.

〈 參 考 文 獻 〉

- 高溶煥, 「國際去來法論」, 經進社, 1986.
- 姜二秀, 「貿易클레임論」, 三英社, 1984.
- 郭潤直, 「民法總則」, 博英社, 1973.
- _____, 「民法總則(民法講義 I)」, 經文社, 1984.
- _____, 「債權總論(民法講義 III)」, 法文社, 1978.
- _____, 「債權總論」, 博英社, 1983.
- 金容福, 「貿易實務」, 博英社, 1985.
- 추장엽, 김웅진, 「무역실무론」, 형설출판사, 1994.
- 金雄鎭, 「國際物品賣買契約上 履行不能에 관한 研究」, 明知大學校 大學院 博士 學位請求論文, 1990.
- _____, 「貿易去來上 貿易代理店の 責任限界에 관한 研究」, 「國際商學」, 韓國國際商學會, 1992.
- 金俊鎬, 「民法講義」, 法文社, 1991.

- 金贊嶽, 韓東湖, 「合作投資의 典型契約을 위한 研究」, 大韓商事仲裁院, 1991.
- 金行權, 「貿易契約」, 貿易經營社, 1981.
- 徐希源, 「英美法講義」, 博英社, 1984.
- 玉璿鍾, 「貿易契約論」, 法文社, 1988.
- 李慶武, 「國際賣買契約에서의 不可抗力(Force Majeure)條項」, 「仲裁」, 大韓商事仲裁院, 1987.
- 李泰熙, 「國際契約法」, 學研社, 1985.
- 李恒寧, 朴一慶, 「法律學辭典」, 東民出版社, 1985.
- 林泓根, 「輸出貿易契約의 法理」, 三英社, 1978.
- 張英俊, 「貿易契約論」, 學文社, 1992.
- 張致順, 「貿易클레임論」, 東星社, 1985.
- 鄭己人, 「商事仲裁論」, 貿易經營社, 1984.
- 洪武夫, 「英文國際契約」, 경영문화원, 1985.
- 大韓商工會議所, 「國際建設去來와 契約保證」, 1984.
- 大韓商事仲裁院, 「貿易紛爭의 實態調査 結果報告書」, 1991.
- _____ , 「仲裁」, 各月號.
- 國際去來法學會, 「貿易紛爭의 解決」, 國際去來法研究, 1992.
- 高麗大學校貿易研究所, 「世界貿易經營大典」, 1979.
- 貿易代理店協會, 「貿易代理店業解說」, 1989.
- 韓國外換銀行, 「英文契約書作成方法」, 1984.
- 仲裁法.
- 小島武司稿, 「會社法務部の理想と現實」, 商事法務研究會, 1982.
- 守屋善輝, 「英美契約法概說」, 有斐閣, 1971.
- 森井 清, 「國際商事仲裁の研究」, 東京大學出版部, 1978.
- 有斐閣, 「貿易と法律(1)」, 貿易實務講座 第8卷, 1962.
- 原 猛雄, 「貿易契約の研究」, ミネルウア書房, 京都, 1970.
- 中村己喜人, 「貿易契約論」, 有朋堂, 1976.
- 津田昇, 「貿易引合と契約」, 通商産業調査會, 1972.
- 土井輝生, 「國際契約ハンドブック」, 同文館, 1971.